

의안번호	제2024-16차
의결일자	2024년 10월 4일

## 이 사 회 의 사 록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이 사 회 의 사 록

1. 일 시 : 2024년 10월 4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 소재 본점 회의실
3. 출석인원 : 법인이사총수 1명 출석법인이사수 1명  
                  감독이사총수 2명 출석감독이사수 2명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본 회사” 라 한다)의 의장인 법인 이사 서울투자운용(주)로부터 직무수행자로 선정된 정은호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4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키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의장은 “이사회 자료” 를 통하여 오늘 이사회 의 부의안건을 상정하다.

## 의 안 1. 민사소송 선행 판결에 따른 추가 매매대금 지급(염리2구역)

의장은 의안1. 민사소송 선행 판결에 따른 추가 매매대금 지급(염리2구역)에 관하여 이사회 자료를 통하여 설명한 후,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1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이로서 금일 의안이 전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

상기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다.

2024년 10월 4일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장/법인이사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감독이사

마 상

혁

감독이사

김 치

현

배부자료 : 제16차 이사회 자료